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26
----------	-------

발의연월일 : 2025. 9. 3.

발의자 : 강대식 · 조지연 · 김상훈

이인선 · 고동진 · 이양수

최수진 · 김장겸 · 김선교

박수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은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연령 상이에 따른 청년지원에 대한 정책별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 1인가구의 증가와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하여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상향·통일함으로써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통일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법률 제 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u> 사람을 말한다.	1. ----- ----- <u>19세 이상 39세</u> <u>이하인</u>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